##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47 발의연월일: 2021. 4. 21.

발 의 자: 박대수·권명호·김성원

김 웅・김형동・서범수

양금희 • 이종성 • 정찬민

지성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 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법률 제 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	
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	
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
	<u>당한다)</u>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
	<u>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